

구 매 규 정

대 한 축 구 협 회

구 매 규 정

2006. 1. 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에서 소요되는 물품, 시설공사, 제조, 대여, 용역 등의 계약업무에 관한 기준과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부서)

구매담당부서에는 구매의뢰부서와 구매부서가 있으며, 구매의뢰 부서는 해당 국실과 파주NFC 등 협회내 인가된 부서를 의미하고 구매부서는 총무부가 된다.

제3조(구매의뢰 및 구매절차)

- ① 구매 의뢰부서는 구매의뢰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이를 구매부서에 제출한다.
- ② 물품의 구매·제작·용역 및 수리의 의뢰는 해당 부서가 제출하는 서식의 구매의뢰서에 의하며, 구매의뢰서에는 품명·규격·수량·지출예산과목을 명기하되 필요시에는 설계도면과 카탈로그, 설명서 등을 첨부한다.
- ③ 구매부서는 구매의뢰서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구매를 집행한다.
- ④ 물품의 구매 시 의뢰부서 책임자와 구매부서의 책임자가 합동으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이미 결재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구매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구매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에는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개경쟁에는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이 있다.

제5조(일반경쟁)

- ① 모든 구매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

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6조(제한경쟁)

① 특수한 성능, 품질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이나 협회가 제반조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 초청 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한경쟁계약에 해당되는 계약에는 대표팀 숙소, 승용차, 승합차, 가구, 대회 진행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 등이 있다.

제7조(수의계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가) 긴급한 행사

나)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다)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라) 협회의 후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후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매 계약하는 경우

② 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재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③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대비하여 최저견적가로 계약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경쟁 입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① 구매부서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입찰 전에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봉하여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계약업무 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유효입찰인가를 확인하고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한다.
- ③ 예정가격 85% 이상의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도와 과거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④ 낙찰자의 최종 결정은 사안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9조(계약서의 작성)

- ①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의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계약 담당자는 구매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와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대금의 지급)

공사, 제조 및 구매된 물품의 대금 지급은 검사자의 검사를 필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조건상 선급금 또는 중도금지급을 요청할 시는 예외로 한다. 이때 검사자는 관련 부서장과 사용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